www.acrc.go.kr

공직유관단체
규정(정관 등 사규) 공개
설명회 자료

2011. 9. 8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목 차

Contents

공직유관단체 규정(정관 등 사규)
공개 가이드라인 ····· 1

공직유관단체 규정(정관 등 사규)
공개 관련 참고자료 ····· 23

개선권고 과제 점검 결과 및
개선·보완 사항 ····· 39

공직유관단체 규정(정관 등 사규) 공개 가이드라인

공직유관단체
규정(정관 등 사규)
공개 가이드라인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청렴하고 투명한 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목 차

규정 공개 추진배경

추진경과 및 기대효과

규정 공개 가이드라인

맺음말

2

1. 공직유관단체 규정 공개 추진배경

3

공직유관단체 기능 및 역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에 대한 구체적 서비스 제공

노동 환경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
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
환경 유해물질 검사

국토 해양
감정평가
철도차량 정비 및 임대
고속도로 신설 및 관리

농림 수산
소비지 산지 협력 지원
농지관리 기금 지원
축산물 등급 판정

문화 체육
체육진흥기금 운용
올림픽 등 참가지원
문화산업 지원

4

공직유관단체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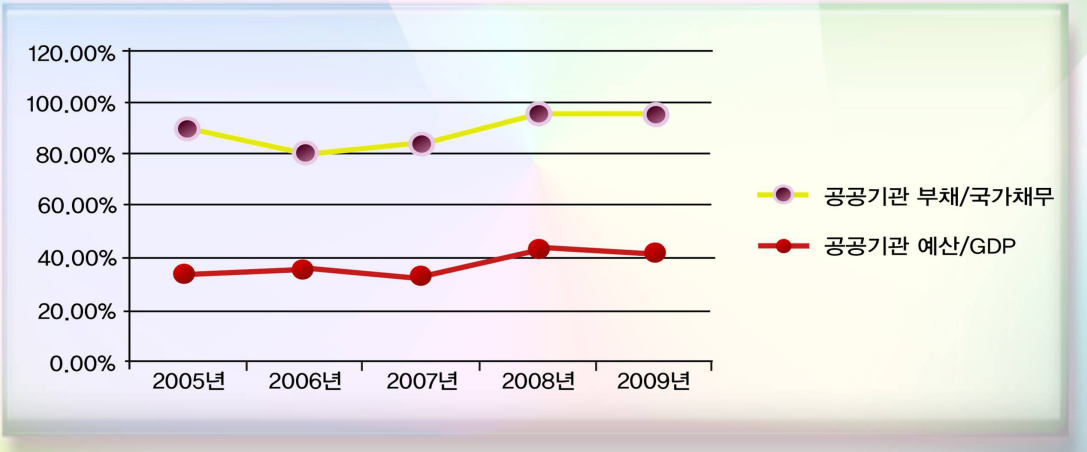

❖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 채무 대비 약 95%**에 이르고 있으며, **공공기관 예산은 GDP대비 약 40%**에 이르고 있음.

-공공기관 부채는 ('05년219.4조원 → '09년 341.6조원)으로 증가추세로 '10년도 386.6조원에 달함.

5

공직유관단체 사규란?

- 공직유관단체의 조직 ·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준칙으로 지침, 요령, 요강 등 공직유관단체가 기관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정관 등 내부규정

사규의 정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의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정하는 정관 등 내부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① ~ ⑧ (생 략)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공직유관단체 사규 공개 현황

공개율(%)	기관 수	공개율(%)	기관 수
100% 공개	7개 기관	41~50% 공개	7개 기관
91~99% 공개	1개 기관	31~40% 공개	5개 기관
81~90% 공개	-	21~30% 공개	15개 기관
71~80% 공개	3개 기관	11~20% 공개	25개 기관
61~70% 공개	2개 기관	1~10% 공개	33개 기관
51~60% 공개	3개 기관	비공개	15개 기관

* 규정 공개 현황은 세칙, 요령, 요강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규정되어 사규집을 기준으로 공개 현황 여부를 조사 (3.31.기준)

❖ 현재 주요 공개되는 사규는 예산, 재정현황, 직제 등 조직 내부 운영과 관련 한 규정이 대부분

❖ 대부분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운영 관련 규정 대다수가 비공개

7

참고- 선진국의 공개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미국의 공직유관단체(government corporation)의 경우 홈페이지에 규정을 공개하고 있으나 조직 내부운영과 관련된 규정보다는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공개 ('11.5월, 법제연구원)

-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 — **은행재정상태평가, 은행신탁업무평가 등 사업에 관련 된 내부 업무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
-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우리나라 국민연금보험공단) — **연도별 지급금액 결정지침 등 업무 관련 중요 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

8

비공개 문제1. 국민의 정보 접근성 차단

국민권익위원회

- 대다수의 기관이 민원사무처리 규정 등에 민원 제기 방법 및 처리절차,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비공개 하고 있어 민원인의 처리기한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 검정, 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처리 기준, 절차 등 규정 비공개로 규정 공개 요구가 빈발적으로 발생
- 금융 애로지원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이 있으나 이해 당사자에게 관련 규정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의 제정목적을 알 수 없는 경우 발생
-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규정 등이 있으나 홈페이지 등에 관련 사항이 나와있지 않아 이의제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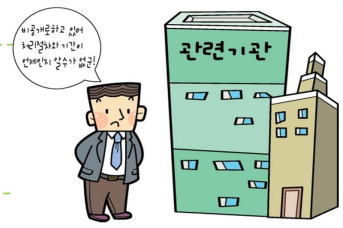

9

비공개 문제2.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인한 부패유발요인 내재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연금기금 위탁운용사 및 증권사 선정기준, 절차 등 비공개로 인하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로비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고, 임의로 평가결과를 상향 조정하는 등 불투명한 사업 운영 문제가 국정감사시 지적
-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방법.기준 및 금액 구간별 수수료율을 규정한 「감정평가보수규정」은 비공개 되어 있어 할증이나 할인에 대한 규정을 알 수 없어 수수료외 대가요구, 브로커 등 불법사건 발생

- 어려운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원한도 규정을 어기고 비상임이사가 소속된 회사에 추가 지원한 후 뒤늦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 문제가 국정감사시 지적

10

비공개 문제3. 공정성 저해 문제 발생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203개 매점 및 간행물 판매소 위탁 대상자를 장애인 등은 극빈층인 경우에만 임대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퇴직 임직원은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임대토록 규정한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 국립대병원에서 「진료비 감면규정」에 진료비 감면기준을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임의로 규정하여 진료비를 지난해만 197억원을 감면한 문제가 감사원 감사시 지적
- 무료회원제도 운영 규정을 비공개로 폐쇄적으로 회원을 선정.운영하여 개인병원장, 건설업체 대표 등 특정회원에게만 무료 혜택을 부여 ('11.5월, MBC)

- 국가계약법령과 다르게 재공고 절차 및 2개 이상업체의 견적없이 바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운영하여 다수 업체에 계약 기회를 줄 수 없는 문제 발생이 감사원 감사시 지적

11

비공개 문제4. 국민의 처리 결과에 대한 불신 유발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중소기업 보증 관련 규정이 비공개되어 업체의 청탁 및 이해관계자인 국민이 규정의 준수여부를 판단 할 수 없어 처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할 소지
- 요양기관 평가에 관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비공개로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평가결과에 대한 불복 등 수용 가능성 저하 문제 발생
- 장애인검정업처리지침은 검정 업무 처리에 있어 장애인 수험자에 대한 편의제공 방법,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비공개로 서비스 기준 등에 대한 문의 및 이의제기 발생

12

2. 추진경과 및 기대효과

13

공직유관단체 규정 공개 추진 경과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7단계** 공직유관단체 규정 검색 사이트 구축 검토 추진(11월)
- **6단계** 각급 기관 및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9~10월)
- **5단계** 가이드라인 마련 · 배포(7월)
- **4단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전문가 추가 자문(6월)
- **3단계** 115개 대상 공개가 필요한 사규 협의(5월)
- **2단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실시 (4월)
- **1단계** 공직유관단체 규정 공개 현황 조사 (4월)

14

규정 공개와 청렴도, 국민편익 관계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규정 공개는 청렴도 및 국민편의 제고 관점에서 중요

청렴도 관점

업무처리 기준·절차 등 규정 공개는 기준·절차의 공개성, 규정의 준수성, 처리결과의 신뢰성 등 외부청렴도 제고

국민의 편의 관점

적극적 정보 제공으로 국민이 업무처리 기준·절차 등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겪어야 하는 불편 해소 및 처리 절차, 결과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15

기대효과1.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2천만명의 국민이 납부한 약 400조원의 국민연금 위탁사 선정 관련「국민연금 기금 운용 관련 제 기준 및 지침」공개로 거래 기관의 거래 편중 등 국회, 감사원 등 외부 기관에서 지적 된 **업무의 불투명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약6천2백억의 농지관리기금이 지원되는 농지은행사업을 규정한「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사업 업무지침」등 공개를 통해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3백만 **농업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 경매와 담보대출 한도 책정 등 사적거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방법. 기준 등을 규정한「감정평가 보수규정」공개로 수수료 예측이 가능함에 따라 **국민 및 기업의 자금계획 수립에 편익 제고**

16

기대효과2. 사규 공개를 통한 균등한 기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경북대학교 등「진료비 감면규정」공개로 진료비 감면에 있어 특정인에 대한 무분별한 감면 등에 소요되는 **국민의 세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 한국마사회 등「고정자산 관리규정 시행세칙」공개로 203개 매점 및 간행물 판매소 **위탁 대상 선정 및 운영의 공정성 제고**
- 한국전력공사의 계약관련 사항을 전체적으로 공개하여 매년 약 5조8천억원 규모의 계약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를 통해 계약 관련 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17

기대효과3. 업무처리의 책임성 제고 및 민원처리 비용감소

국민권익위원회

- 약 57조원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기술보증 운영 관련 규정 공개로 담보대출이 곤란하여 경영상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의 **보증업무 심사의 책임성 강화**
- 민원사무처리 규정, 중소기업 금융 애로 지원을 위한 업무처리기준, 이의신청 등 규정 공개로 **민원사무처리의 예측가능성 제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평가관리 규정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함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가능성 제고**
- 사업의 처리 기준, 절차 등 공개로 정보공개 청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

18

참고-정보공개 관련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마땅한 일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들이 출연, 출자한 비영리법인도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시키도록 행정안전부에 법령개선안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지자체가 출연한 문화재단과 장학회 등의 예결산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시민감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법령개선안 권고 결정은 일부 광주시민들이 (재)광주비엔날레와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예산서 · 결산서 정보공개 요청이 계기가 됐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등 일부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예산공개를 꺼리는 광주시의 시대착오적이면서도 오만한 입장을 철회시킬 수 있게 됐다는 점

공개 법령개선안을 권고한 것은 국가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단 관계자들의 예산전횡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전향적인 조치다. 국민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광주비엔날레나 유니버시아드 조직위가 예산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 자체가 [illegible]에 맞지 않는, 볼썽사[illegible]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권익위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국민의 행정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11.8월, KBS〕

공개로 공정성 높인다
〔 '11.6월, 헤럴드〕

공정성 · 투명성 강화 위해 공개
〔 '11.3월, 머니투데이〕

19

3. 규정 공개 가이드라인

20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공직유관단체 규정 공개 가이드라인

공직유관단체 규정 공개 목적

- 공직유관단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정·보유·관리하는 사규에 대한 공개 대상 및 범위 등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 **공직유관단체가 수행하는 업무 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규정 공개 가이드라인 취지

- 국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정에 대한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 공개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하여 각급 기관의 실정에 맞게 **공개 관리 규정을 제정, 기관 자율적으로 사규 공개를 추진토록 유도**

21

공직유관단체 규정 공개 가이드라인

국민권익위원회

사규 공개 대상 기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의 공직유관단체 675개 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 - 29호)

- 한국은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거나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단체
-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22

공직유관단체 규정 공개 가이드라인

국민권익위원회

사규 공개의 원칙

-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관 등 내부규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공공성 보다는 **기업성이 강한 규정 등에 대하여는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비공개 대상 사규

-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규

※ (예시) 수협중앙회의 경우 **민간 은행과 은행영업 부분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어 「여신규정」 등 은행 업무 관련 규정의 경우 공개될 경우 **수협의 이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비공개

23

공직유관단체 규정 공개 가이드라인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비공개 대상 사규

- **감독·검사·심사·평가 관련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규**

  ※ (예시) 석유관리원「석유제품 품질검사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경우 업무의 **단속방법 등을 규정, 공개시 단속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비공개

- **보안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보안상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규**

  ※ (예시) 인천국제공항 공사「정보보안지침」의 경우 **인천공항의 보안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공개시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공개

24

공직유관단체 규정 공개 가이드라인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부분 공개 대상 사규

-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나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규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규정을 제외하고 공개**

  ※ (예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요강, 세칙 등은 감정평가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감정업체와의 경쟁**으로 **영업상 비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방식 등 **부분만을 제외하고 공개**

  ※ (예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운용요령 등은 신용보증의 처리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규정 공개 시 신용보증 브로커 등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큰 기준 반영비율 등은 제외하고 기준, 이의신청 처리 절차 등을 공개

25

공직유관단체 규정 공개 가이드라인

국민권익위원회

사규 공개 추진 절차

- **사규 공개 관리 규정을 기관 실정에 맞게 마련**하고 기관 자율적으로 사규 공개를 추진

- **비공개 대상 사규 선정에 있어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위원회 등에서 결정**토록 하는 방안 마련

26

[예시] OOO기관 사규 공개 관리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유관단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정·보유·관리하는 사규에 대한 공개 대상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 공직유관단체가 수행하는 업무 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규"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의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정하는 정관 등 내부규정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사규를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하여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직유관단체"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이 준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규 공개의 원칙) 공직유관단체가 **제정·보유·관리하는 사규**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27

[예시] OOO기관 사규 공개 관리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비공개대상 사규) 공직유관단체가 제정·보유·관리하는 사규 중 사규 공개심의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한 사규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규**
2. **감독·검사·심사·평가 관련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규**
3. **보안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보안상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규**

제5조(부분공개대상 사규)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정·보유·관리하는 사규 중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정과 공개가 가능한 규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사규 공개 관련 부패영향평가)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 공개 관련 **공개대상 여부, 공개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개 관련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8

[예시] OOO기관 사규 공개 관리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7조(사규공개심의회) ① 공직유관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규 비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규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00이 되고 위원은 소속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과반수 이상은 당해 소관 공직유관단체 사업수행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8조(사규의 공개 대상 관리) ①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일반국민이 사규를 원활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 사규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개 관련 부패영향평가 등을 권고할 경우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9

참고

규정 공개 우수기관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1. 규정의 연혁까지 체계적으로 검색

30

참고

규정 공개 우수기관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2. 최근 개정 규정 및 판례정보 까지 검색

31

4. 맺음말

32

청렴의 필요성-1. 국내 · 외 반부패 환경 변화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33

청렴의 필요성 -2.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 국부(國富)는 어디에서 오는가? (World Bank, 200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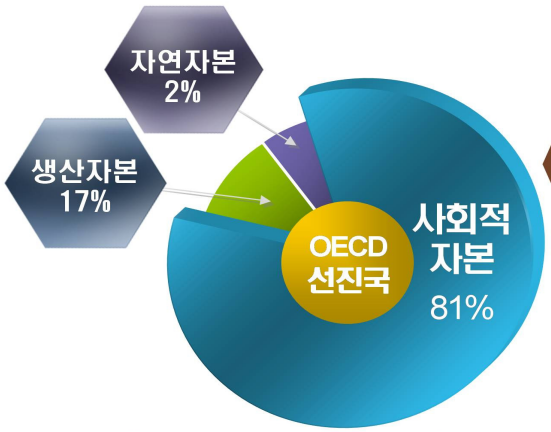

▷ 21C 국가의 생산성은 신뢰성, 투명성 등의 '사회적 자본'이 좌우

-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OECD 선진국의 1/3 수준

국부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자본의 비중

청렴의 필요성-3. 현대적 의미의 청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淸廉, Integrity)의 개념

❖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국민의식과 기대치 상승 → '청렴'의 개념 확대

전통적 의미 : 반부패 (소극적, 타율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적, 비윤리적 방법으로 특정인이 공익에 반해 사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일탈행위 등을 방지 또는 처벌하는 것

(예) 뇌물수수, 배임횡령, 예산낭비 등의 적발과 처벌

현대적 의미 (적극적, 자율적)

정부행위의 과정,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투명성과 공직자가 직업윤리기준에 따라 대민행정을 실시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는지를 뜻하는 책임성을 포괄

(예) 공직윤리 준수, 투명성, 책임성 알선·청탁 등 이익충돌 회피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36

공직유관단체 규정(정관 등 사규) 공개 관련 참고자료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공직유관단체는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 **정부업무의 위탁**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처리지침 등을 **사규로 제정·운영**

○ 공직유관단체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에 따라** 사규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증대됨에도** 사업수행에 관한 기준, 절차를 정한 **사규 등에 대한 공개는 미흡**한 실정

※ '10년 기준 **공공기관의 자산은 654조원, 부채는 386.6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1년 국가예산 309.1조원을 상회하는 수치임.

- 관련 기준 및 절차의 비공개는 이해관계자인 대다수 **국민의 정보 접근성 차단,** 사업추진과정에서의 **특권적 이익 발생, 책임성 저하** 등 **대국민 신뢰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

- 또한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에 있어서도 **부패유발요인의 사전적 제거를 어렵게 하여**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이에 사규 공개 **가이드 라인을 마련·배포**하여 공직유관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련 **사규를 공개토록 유도**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의 윤리·투명 경영을 제도화**

-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공직유관단체 사업운영의 공정성·책임성을 담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경위

○ 사규 공개 확대 **추진 계획 보고** (3월)

○ 사규에 대한 **일반 현황 조사** (4월)

※ **선진 외국의** 공직유관단체 규정 **공개 현황** 및 **115개 시책평가 대상기관 공개 현황** 조사

○ 사규 공개 추진을 위한 **기관 간담회** 실시 (4.15.)

※ **공개가 필요한 사규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비공개가 필요한 사규**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기관의 의견 수렴 필요성** 제시

○ 사규 공개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실시 (4.27.)

※ **사규 공개에 필요성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정책제안이라는데 공감**하고, 공개 추진 시 기관 **자율적 노력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제시

○ 675개 기관 사규 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115개 시책평가 대상기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개가 필요한 사규에 대한 협의 실시** (5월~)

○ 사규 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전문가 자문** 실시 (6월)

Ⅱ 공직유관단체 사규 공개 현황

1.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요

○ 사규 정의

- 공직유관단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준칙으로 지침, 요령, 요강 등 공직유관단체가 **기관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정관 등 내부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사규 분류

- 사규는 **규정 내용에 따라** 인사, 보수 등 **조직 내부 운영 규정**과 **검정, 평가, 지원, 심사** 등 정부업무 위탁 등에 따른 **기관 사업 수행을 위한 규정**으로 구분

- 사규는 형식에 따라 **규정, 세칙, 지침 등 크게 세가지**로 분류

<형식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대분류 (규정 등)	이사회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부여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
중분류 (세칙, 규칙 등)	사장 또는 감사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등 규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서 직접 위임하지는 않았으나 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
소분류 (지침, 요령, 요강 등)	부사장, 이사 등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상위 사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위 사규에서 직접 위임하지는 않았으나 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

2. 공직유관단체 사규 공개 현황

○ 현재 공개되는 주요사규는 효율적인 경영 유도를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공시하라는 OECD 권고**(2005) 등에 따른 예산, 재정현황, 인사, 복무, 복리후생 등 **조직 내부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대부분임.**

- 공직유관단체 중 시책평가 대상기관인 1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공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중 **88개 기관(76.5%)이 사규집을 기준으로 30%이하의 사규를 공개**

- 또한 **73개 기관(63.4%)의 공직유관단체는 20%이하의 사규를 공개**

※ 사규는 규정, 세칙, 지침, 요령, 요강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규정되고 있어 사규집을 기준으로 공개현황 여부를 조사 (3.31.기준)

○ 따라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감정평가 수수료 규정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국민인 사업운영 관련 규정 대다수가 비공개**

【 참고자료- 외국 사규 공개 현황 】

◆ 미국의 공직유관단체(government corporation)의 경우 홈페이지에 규정을 공개하고 있으나 조직 내부운영과 관련된 규정보다는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공개** ('11.5월, 법제연구원)

-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은 은행재정상태 평가, 은행신탁업무평가 등 사업에 관련 된 내부 업무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

-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우리나라 국민연금보험공단)은 연도별 지급금액 결정지침 등 업무 관련 중요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

Ⅲ 공직유관단체 사규 비공개 문제점

1.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정보 접근성 저해

○ 법령에서 공직유관단체에게 위탁한 사업의 경우 **대다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국민**이고 구체적 집행기준, 절차 등은 사규에서 정하고 있으나 **비공개 되어 불투명한 운용 등으로 인한 부패유발요인 내재**

※ 공직유관단체가 법령에 의해 정해진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출연, 출자, 국고보조 등으로 **'11년 현재 29조 4,812억원을 지원** ('10.11월, 국회예산정책처)

- 연기금 운용 관련 위탁 운용사·증권사 선정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임의로 **평가결과를 상향 조정하는 불투명한 사업 운영 문제**가 지적 ('10년 국정감사)

-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과 관련한 할인 등 **상세한 규정이 비공개**되어 국민의 정보 접근성 저해에 따라 브로커 등에 의한 **수수료 외 대가 요구 등도 발생할 우려** ('11.5월, 권익위 조사)

2. 업무처리 기준 등의 비공개로 공정성 저해

○ 공직유관단체의 계약업무 등은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하나 관계직원 등 **특정인의 이익만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공개하지 않아 특혜발생 우려**

- 매점 및 간행물 판매소 위탁 대상자를 **장애인 등은 극빈층인 경우**에만 임대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퇴직 임직원은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임대**토록 규정 ('08.6월, 감사원 감사)

-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진료비 감면규정」에 진료비 감면기준을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임의로 규정**하여 진료비를 **감면** ('10.8월, 감사원 감사)

3. 관련규정의 비공개로 인한 담당자의 책임성 및 국민의 수용가능성 저하

○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 **규정의 준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규가 비공개**되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행정의 책임성·수용가능성을 저하**시킬 소지

- 중소기업 **보증 관련 규정이 비공개**되어 **업체의 청탁** 및 이해관계자인 국민이 규정의 준수여부를 판단 할 수 없어 **처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할 소지 (‘11.5월, 권익위 조사)
- 각급 기관에서 「민원업무처리세칙」에 민원 제기 방법 및 처리 절차, 처리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비공개되어 실제로 필요한 민원인은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문제** 발생 (‘11.5월, 권익위 조사)

Ⅳ 기대효과

1.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

○ 이해관계자인 국민에게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 제고**

※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기관별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 등 투명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10.12월, 청렴도 건의사항 보고서)

- 심사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업무처리 기준/절차 등 공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 공개 예정 사규 현황 】

◆ 2천만명의 국민이 납부한 약 400조원의 국민연금 위탁사 선정 관련「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제 기준 및 지침」공개로 **거래 기관의 거래 편중 등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지적 된 업무의 불투명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약6천2백억의 농지관리기금이 지원되는 농지은행사업**을 규정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업무지침」 등 공개를 통해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3백만 농업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 **경매와 담보대출 한도 책정** 등 사적거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방법·기준 등을 규정한 「감정평가 보수규정」공개로 수수료 예측이 가능함에 따라 국민 및 기업의 **자금계획 수립에 편익 제고**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 및 사업보증 시 지불하는 보증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법, 보증료율, 환급절차 등「보증료 등의 운용규정」공개로 **국민 및 사업자들이 주택금융보증에 따른 구체적인 보증료 산정에 대한 이해제고**

◆ 고효율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 **인증관련 구체적 평가기준, 절차**,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규정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업무 운영규정」공개로 제조업체**의 인증심사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2. 사규 공개를 통한 균등한 기회 제공

○ 사규 공개를 통해 **기관 자율적으로 특혜적 규정을 개선·정비하고** 정보 공유를 통한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공정성 제고**

【 주요 공개 예정 사규 현황 】

◆ 경북대학교 등 「진료비 감면규정」 공개로 **진료비 감면에 있어 특정인에 대한 무분별한 감면 등에 소요되는 국민의 세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 한국마사회 등 「고정자산 관리규정 시행세칙」 공개로 **203개 매점 및 간행물 판매소 위탁 대상 선정 및 운영의 공정성 제고**

◆ 한국전력공사의 계약관련 사항을 전체적으로 공개하여 매년 약 5조8천억원 규모의 **계약**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를 통해 계약관련 업무의 투명성 제고**

3. 외부통제에 따른 업무처리의 책임성 제고

○ 업무처리 기준·절차 등 공개를 통해 담당자의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성 및 일반국민의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수용가능성 제고**

【 주요 공개 예정 사규 현황 】

◆ 약 57조원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기술보증 운영 관련 규정 공개로 담보대출이 곤란하여 **경영상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의 보증업무 심사의 책임성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공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관련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함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가능성 제고**

4. 민원처리 비용감소 및 투명성 제고

○ 민원사무처리 규정, 각 사업규정의 이의신청 절차, 사업처리의 기준 등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민원인의 편의성·예측가능성 제고**

【 주요 공개 예정 사규 현황 】

◆ 민원사무처리 규정, 중소기업 금융 애로 지원을 위한 업무처리기준, 이의신청 규정 공개로 **민원사무처리의 예측가능성 제고**

◆ 사업의 처리 기준, 절차 등 공개로 정보공개 청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

Ⅴ 공직유관단체 사규 공개 가이드라인

국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정에 대한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 공개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하여 각급 기관의 실정에 맞게 공개 관리 규정을 제정, 기관 자율적으로 사규 공개를 추진토록 유도

□ 공개 대상 사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의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정하는 정관 등 내부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

□ 사규 공개 대상 기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의 공직유관단체 675개 기관

※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 - 29호)

- 한국은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거나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단체
-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 사규 공개의 원칙

○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관 등 내부규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공공성 보다는 **기업성이 강한 규정** 등에 대하여는 **부분 공개 또는 비공개**

□ 비공개 대상 사규

○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규

※ (예시) 수협중앙회의 경우 **민간 은행과 은행영업 부분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어 「여신규정」 등 은행 업무 관련 규정의 경우 공개될 경우 **수협의 이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비공개

○ **감독·검사·심사·평가 관련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규

※ (예시) 석유관리원 「석유제품 품질검사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경우 업무의 **단속방법 등을 규정하여 공개시 단속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비공개

○ **보안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보안상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규

※ (예시) 인천국제공항 공사 「정보보안지침」의 경우 **인천공항의 보안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공개시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공개

□ 부분공개 대상 사규

○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나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규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규정을 제외하고 공개

※ (예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요강, 세칙 등은 감정평가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감정업체와의 경쟁**으로 **영업상 비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방식 등 **부분만을 제외하고 공개**

※ (예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운용요령 등은 신용보증의 처리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규정 공개 시 신용보증 브로커 등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큰 기준 반영비율 등은 제외하고 기준, 이의신청 처리 절차 등을 공개

□ 사규 공개 추진 절차

○ 사규 공개 관리 규정을 **기관 실정에 맞게 마련**하고 기관 **자율적으로 사규 공개를 추진**

○ **비공개 대상 사규 선정에 있어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위원회 등에서 결정**토록 하는 방안 마련

【예시】: 사규 공개 가이드라인

「ㅇㅇㅇ기관 사규 공개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유관단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정·보유·관리하는 사규에 대한 공개 대상 및 범위 등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 공직유관단체가 수행하는 업무 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규"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의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정하는 정관 등 내부규정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사규를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하여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직유관단체”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이 준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규 공개의 원칙) 공직유관단체가 제정·보유·관리하는 사규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비공개대상 사규) 공직유관단체가 제정·보유·관리하는 사규 중 사규공개심의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한 사규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규
2. 감독·검사·심사·평가 관련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규
3. 보안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보안상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규

제5조(부분공개대상 사규)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정·보유·관리하는 사규 중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정과 공개가 가능한 규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사규 공개 관련 부패영향평가)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 공개 관련 공개 대상 여부, 공개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개 관련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규공개심의회) ① 공직유관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규 비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규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00이 되고 위원은 소속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과반수 이상은 당해 소관 공직유관단체 사업수행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8조(사규의 공개 대상 관리) ①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일반국민이 사규를 원활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 사규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개 관련 부패영향평가 등을 권고할 경우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급 기관의 사규 공개 추진 관련 사항을 구체화할 경우의 예시(안) 임.

개선권고 과제 점검 결과 및 개선·보완 사항

Ⅰ 총 평

가. 계약, 인사 등 공직유관단체 공통규정 개선 관련

○ **인사의 공정성 확보, 예산의 부당집행 방지 등을 위해** 대부분의 기관이 공통사규 개선을 **이행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에 따라 **개선방향 및 취지를 잘 알지 못하여 개선의 효과성 등이 저하** 될 우려

※ 일부 기관에서 제출한 개선 실적의 경우 **개선(안)과 무관한 개선실적**을 제출

나. 심의·의결 위원회 개선 관련

○ 각종 **심의·의결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각급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운영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선 노력이 기관별로 현격하게 차이**

※ 일부 기관의 경우 규정 및 사업 심사 관련 규정속 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침 속에 규정된 각종 심의·의결 위원회 등을 개선**하여 **10개가 넘는 위원회를 검토·개선**

※ 외부적 영향력이 있는 심의·의결 위원회 외에도 **내부적 영향력이 있는 심의·의결 위원회도 개선 한 기관이 있는 반면 일부 기관은 개선한 위원회가 전무**

○ 또한 심의·의결 위원회 개선이 **시책평가를 위한 형식에 그치고 있는 기관**도 있어 **위원회 성격 등을 반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부패개선**을 위한 노력을 제고할 필요

다.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 고발 강화 방안 관련

○ 전년도에 비해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 고발지침을 제정한 기관이 증가**하였으며 다수의 기관이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 고발지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

Ⅱ 개선 과제 세부 항목별 문제점 및 개선·보완 사항

가. 계약, 인사 등 공직유관단체 공통규정 개선 관련

○ **(계약관련)**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수의계약 사유 및 세부 계약정보(하도급 현황 등) 등을 공개토록 하였으나 **일부기관의 경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개선**

※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수의계약 가능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을 개선(안)으로 제출

※ **수의계약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홈페이지인 인트라넷에 공개**토록 규정

○ **(인사관련)** 인사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징계양정 기준 구체화 등 개선과제를 권고하였으나 개선(안)을 **수정반영하여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

※ 비위관련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임직원에 대해 **의원면직 불허가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재량으로 규정**

※ 금품수수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구체화**토록 하였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금품수수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등 선언적 규정**만을 제정

○ **(기관운영비 관련) 법인카드 사용시 실명기재 의무화** 등 개선과제는 **대다수의 기관이 이행**하였으나 업무추진비 월별 공개 규정 마련에 대하여는 다수의 기관이 **분기별, 반기별로 공개**하거나 **공개 주기 없이 공개 근거만**을 규정

《개선·보완 사항》

√ 전년도 개선과제인 공통규정 개선과제를 **미이행 한 기관의 경우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미이행 한 과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

※ 관련 자료 : 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자료- 부패방지 정책- 부패영향평가- 공통사규 개선 설명회 자료

√ 25건 공통규정 개선과제 중 **수정 반영하거나 부분적으로 이행한 기관의 경우** 관련 개선(안)의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실제 부패방지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과제를 개선 추진

나. 심의·의결 위원회 개선과제 관련

○ **(개선 대상 선정)** 개선 대상 심의·의결 위원회 선정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여 **사업운영 관련 위원회를 개선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내부적 영향력이 있는 위원회만을 개선**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개선 대상 위원회가 상이**

○ **(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위촉, 위촉에 있어 공모절차 규정, 외부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등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에 대하여 다수의 기관의 이행 **노력이 미흡**

○ **(민간위원의 청렴성 확보)** 일반적인 자격조건인 외부 위원의 경우에도 **연임횟수를 규정하지 않는 기관**이 일부 있었으며 **다수의 기관이 부패행위자에 대한 위촉 제한 및 해촉 중 일부**만을 규정

※ 일부 기관이 임기만 규정하거나 연임 제한없이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계속적 연임에 따른 유착문제 등 문제 발생** 소지

【참고】

법령입안 심사기준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다수의 기관이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

※ 제척·기피·회피 사유로 “**해당안건에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포괄적**으로 규정한 기관 다수

○ **(위원회 심의) 위원회 심의의 충실성 제고**를 위해 서면회의는 지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기관의 경우 서면회의 사유를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등으로 **서면회의를 광범위하게 인정**

《개선·보완 사항》

√ 규정속에는 위원회가 없으나 **개별 사업 추진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 기관**의 경우 **위원회 표준규정(안)을 활용**하여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 할 필요

√ 중간 실적 제출시 **외부위원 위촉 등을 부정적으로 검토한 기관**의 경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 위촉, 외부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등에 대한 개선**을 다시 한번 검토

√ 일반적인 자격요건의 경우 **임기 및 연임횟수를 제한**하고,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위촉 제한 및 해촉을 모두 규정**

√ 이해충돌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관 사업 및 위원회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

다.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 고발 강화 방안 관련

○ 시책평가 대상 기관 대부분이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 고발지침을 제정하여 제출하였으나 시책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많은 기관이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 고발지침 제출을 누락**

※ 시책평가를 받지 않는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경우 대부분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미제출**

○ ‘공금횡령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나 **고발을 재량으로 규정하거나 예외를 둠**으로써 로비 등을 통해 **고발을 피해갈 가능성 상존**

○ **퇴직자, 임원 등을 고발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임원 및 퇴직후 적발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여부가 **담당자 자의에 의해 원칙없이 결정될 여지** 존재

○ **고발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고발사건 묵인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비**하여 **고발사건을 지연시키거나 묵인**할 소지

《개선·보완 사항》

√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 고발지침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10.31.(월) 까지 제출**

√ 고발대상 범죄에 대한 **고발 의무화, 퇴직자를 고발대상자에 포함, 고발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고발사건 묵인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관련 개선사항이 모두 관련 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참고 각급 기관에서 검토 한 심의·의결위원회 현황

연번	위 원 회 명	기 관 명	연번	위 원 회 명	기 관 명
1	안전인증 심의위원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4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무원연금공단
2	융자 ·보조심사위원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5	체납정리위원회	공무원연금공단
3	KOSHA18001인증 결정위원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6	기금운용위원회	공무원연금공단
4	계약심의위원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7	금융자산운용위원회	공무원연금공단
5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운영위원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8	금융자산투자위원회	공무원연금공단
6	연구과제선정위원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9	대체투자심의위원회	공무원연금공단
7	연구과제평가위원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0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가스안전공사
8	교과과정심의위원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1	사고조사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9	시험위원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2	학술지편집위원회	승강기안전관리원
10	계약심의위원회	한국석유공사	33	표준개발협력기관기술 위원회	승강기안전관리원
11	정보공개심의회	한국석유공사	34	산업기반보증전문위원회	신용보증기금
12	배상심의회	남부발전	35	재심의위원회	신용보증기금
13	특수계약심의위원회	남부발전	36	기금운용심의회	국민체육진흥공단
14	기자재 공급자 관리위원회	한국전력공사	37	기금융자심의회	국민체육진흥공단
15	특수계약심의위원회	한국전력공사	38	지식재산권 획득심의 위원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6	중소기업협력연구개발 과제선정예비심의 위원회	한국전력공사	39	심의조정위원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7	중소기업협력연구개발 과제선정심의위원회	한국전력공사	40	계약심의위원회	지역난방공사
18	개발선정품 운영위원회	한국전력공사	41	연구개발위원회	지역난방공사
19	성과공유추진위원회	한국전력공사	42	연료비연동제검증위원회	지역난방공사
20	성과공유실무위원회	한국전력공사	43	계약심의회	조폐공사
21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위원회	한국전력공사	44	방송진흥기금운영 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22	신기술심사위원회	한국건설교통기술 평가원	45	감사인선임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23	신기술심사위원회	한국건설교통기술 평가원	46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책임심의위원회	문화예술위

연번	위 원 회 명	기 관 명	연번	위 원 회 명	기 관 명
47	재정위원회	한국마사회	67	의료행위전문평가 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8	기부금심의위원회	한국마사회	68	한방의료전문평가 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9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69	치료재료전문평가 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0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 심의조정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70	인체조직전문평가 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1	품질관리심의위원회	한국석유관리원	71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2	계약심의회	한국철도공사	72	이의신청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3	규격심사회	한국철도공사	7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4	피해구상심의조정 위원회	한국철도공사	74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5	사업심의위원회	한국철도공사	75	중증질환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6	투융자복합금융심의 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76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7	융자심의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77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책임심의위원회	문화예술위
58	자원개발본부 직접투자심의위원회	한국광물자원공사	78	건설기술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토지주택공사
59	갱도굴진사업기금운용 위원회	한국광물자원공사	79	문화재 조사용역 수행능력심사위원회	토지주택공사
60	국내자원산업자금 융자위원회	한국광물자원공사	80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위원회	토지주택공사
61	리스크관리위원회	한국광물자원공사	81	조성원가 산정 및 심의위원회	토지주택공사
62	녹색인증 평가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2	기술심의위원회	토지주택공사
63	위해정보평가위원회	한국소비자원	83	설계심사위원회	토지주택공사
64	회계감사인선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84	특수계약심의위원회	동서발전
65	철도안전관리규정 검토위원회	교통안전공단	85	청소년수련활동인증 위원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66	시험관리위원회	교통안전공단	86	투자및자금업무 심의위원회	한국공항공사

연번	위 원 회 명	기 관 명	연번	위 원 회 명	기 관 명
87	자금위험관리위원회	교통안전공단	109	상업시설임차인 선정위원회	한국공항공사
88	방송기자재도입 심의위원회	도로교통공단	110	자금운용심의위원회	한국공항공사
89	운전적성판정위원회	도로교통공단	111	계약심의위원회	한국공항공사
90	예술영화인정소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112	최저가낙찰제 심사위원회	한국공항공사
91	이의신청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113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
92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114	투자및자금운용심위 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
93	원자력안전심의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15	급여재심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
94	보상심의위원회	SH 공사	116	자산운용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
95	분양가심사위원회	SH 공사	117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96	계약심의위원회	한국환경공단	118	광고진흥자금 운영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97	굴뚝원격감시체계 기술검토심의회	한국환경공단	119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위원회	한국도로공사
98	소방검정기술심의위원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20	예산집행심의위원회	한국도로공사
99	안정성평가위원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21	설계자문위원회	한국도로공사
100	친환경농산물인증심 의위원회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원	122	계약심의위원회	주택보증
101	계약심의회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123	매입심의위원회	주택보증
102	공사비산정사전심의 위원회	남동발전	124	연구과제선정위원회	대한지적공사
103	1차실무심의위원회 2차본심의위원회	석탄공사	125	연구심의회	대한지적공사
104	광해심의위원회	석탄공사	126	학술지발간규칙	대한지적공사
105	외주용역계약심의위원회	석탄공사	127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주택금융공사
106	보훈복지사업비운영 위원회	보훈복지의료공단	128	언론진흥기금 관리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107	계약심의위원회	보훈복지의료공단	129	언론인금고관리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108	해외농업개발사업융자 심의회	농어촌공사	130	이의신청협의회	무역보험공사

연번	위 원 회 명	기 관 명	연번	위 원 회 명	기 관 명
131	자산운용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56	금융자산운용위원회	무역보험공사
132	전가거래분쟁조정 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57	기술위원회	무역보험공사
133	사이버거래소 분쟁조정관련 위원회	농수산물유통공사	158	제안심사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4	운용사선정 실무위원회	장학재단	159	계약심의회	우편물류지원단
135	기부금품 운영위원회	장학재단	160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136	폐광심의위원회	광해관리공단	161	인터넷주소분쟁 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137	대체산업융자금지원 심의위원회	광해관리공단	162	자산운용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138	항만위원회	부산항만공사	163	한국운영재단위원회 공통운영지침 제정	한국연구재단
139	설계자문위원회	부산항만공사	164	광고심의위원회	서울메트로
140	보증심사위원회	기술보증기금	165	디자인위원회	서울메트로
141	투자심사위원회	기술보증기금	166	상호금융예금자보호 기금관리위원회	수협중앙회
142	리스크관리위원회	기술보증기금	167	심의 · 의결위원회 규정 제정	에너지관리공단
143	자산운용위원회	기술보증기금	168	연구개발심의위원회	한국시설안전공단
144	심사위원회	근로복지공단	169	청년취업아카데미 평가위원회	산업인력공단
14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근로복지공단	170	훈련과정및훈련기관 심사위원회	산업인력공단
146	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근로복지공단	171	HRD인증위원회	산업인력공단
147	계약심의위원회	철도시설공단	172	학습조직화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산업인력공단
148	기술심의위원회	철도시설공단	173	지원심사위원회	산업인력공단
149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174	중소기업인적자원개발 체제진단 위원회	산업인력공단
150	예금보험위원회	예금보험공사	175	컨소시엄심사위원회	산업인력공단
151	계약심의위원회	수자원공사	176	후원금물품심의위원회	산업인력공단
152	특수계약심의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177	심사선정위원회	산업인력공단
153	숙련기술장려 심사위원회	산업인력공단	178	제안서평가위원회	한국우편사업지원단
154	숙련기술장려 적립금운용심의회	산업인력공단	179	심의·자문위원회	한국거래소
155	계약심의위원회	한국전력거래소	180	유가증권시장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한국거래소

연번	위 원 회 명	기 관 명	연번	위 원 회 명	기 관 명
181	비용평가위원회	한국전력거래소	194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한국거래소
182	규칙개정위원회	한국전력거래소	195	코스닥시장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한국거래소
183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전력거래소	196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한국거래소
184	정보공개위원회	한국전력거래소	197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	한국거래소
185	공적평가심사위원회	한국감정원	198	파생상품시장발전위원회	한국거래소
186	택지가격평가심사위원회	한국감정원	199	주가지수운영위원회	한국거래소
187	공적가액평가심사위원회	한국감정원	200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국민연금공단
188	가격심의위원회	한국감정원	201	투자위원회	국민연금공단
189	재심위원회	한국감정원	202	리스크관리위원회	국민연금공단
190	이용자피해보상심의위원회	한국감정원	203	대체투자위원회	국민연금공단
191	제안서평가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204	계약심의위원회	국민연금공단
192	임원추천위원회	중부발전	205	연구심의위원회	세라믹연구원
193	평가위원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6	계약심의위원회	대구도시공사

memo

memo

memo

memo